





보도자료



12.29(화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				
	<금융위원회> 김성조 팀 장 (2156-8003) 김정명 팀 장 (2156-9689) 진선영 팀 장 (2156-9825) 오화세 팀 장 (2156-9630)	담당자	박경덕 사무관 (2156-8004) 이재중 사무관 (2156-9697) 김종식 사무관 (2156-8005) 박석훈 사무관 (2156-8007)		
책 임 자	<금융감독원> 이성원 팀 장 (3145-8855) 채희성 팀 장 (3145-8863) 박학순 팀 장 (3145-8870) 이재학 팀 장 (3145-8876)		장항필 선 임 (3145-8856) 구본홍 선 임 (3145-8864) 전홍균 수 석 (3145-8871) 전부일 수 석 (3145-8878)		
	홍영기 부국장 (3145-8202)		최은희 선 임 (3145-8635)		
배 포 일	2015.12.28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(3145-5789~92) 총 9매		

「금융개혁」위해서는 "꺼진 불씨도 되살린다"

- ▶ 불수용된 현장건의과제 재검토 회의 추진 결과
- ① 업계의 재검토 요구가 큰 불수용 과제에 대해 (전체 불수용 과제의 10% 선별) 금융당국-업계-외부전문가 참여하에 '계급장 뗀' 격의 없는 토론 실시
- ❷ 재검토 대상 건의과제 중 약 50%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론
 - 금융위 사무처장, 금감원 부원장보 등 전향적 결정 가능한 고위간부가 회의 주재
 - 업계의 일부수정 대안,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정책건의 등 적극 수용
- ❸ 앞으로도 '금융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'는 인식 하에 업계의 현장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경청할 것

1. 배 경

- □ (현장점검반 활동) 금년 4월 ~ 12월까지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,625건의 현장건의과제를 수령
- o 현장건의과제 중 약 45%는 수용되어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었으나, 불수용된 과제 건수도 약 34% 차지
 - * 나머지 21%는 중장기 추가검토 과제 (수용율: 10월말 기준)
- □ (불수용건 재검토 필요성) 업계의 반복된 건의가 있고 수용여지가 있는 경우*에는 전향적 재검토를 통해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
 - * 수용 가능성 있는 일부수정 대안 존재, 불수용 결정 이후 정책환경 변화 등
- 특히 **반복되는 건의과제**의 경우에는 **금융당국의 현장인식이 부족** 하거나, **업계의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**한 경우이므로
- 1:1 토론 등 재검토 절차를 통해 상호 이해중진에도 도움

2. 경 과

- □ (재검토과제 선정)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로 불수용 과제의 10% 수준 선정
 - ㅇ 다만 기존 과제를 그대로 재건의시 다시 불수용될 소지가 큰 만큼
 - 협회·현장점검반 합동으로 **일부수정 대안강구, 변화된 정책여건 적시**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보완방안 병행

< 업권별 재검토 과제 (건) >
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
불수용 과제 (9월말 기준)	80	230	181	164
재검토 과제	8	23	18	16

- □ (재검토회의 구성) 업계의견이 격의 없이 생생히 전달되는 가운데,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안점
- ① 참석자의 다수를 업계대표(실무자)*로 구성하여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
- * 직접 건의과제를 작성한 팀장·차장급 →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열의를 그대로 전달
- ② 전향적 정책판단이 가능한 고위급 간부(금융위 사무처장)*가 회의 주재
- * 일부업권의 금감원 소관 과제(보험·비은행)에 대해서는 **금감원 담당 부원장보 주재**
- ③ 해당 업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, 연구기관에서 참석하여 객관적 관점 제시, 당국-업계간 이견에 대한 절충 등 역할
- □ (회의 개최내역) 각 업권별로 1회씩, 총 4회 실시
- * 건의과제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평균 3-4시간 회의 진행

< 불수용 재검토 회의 실시내역 >

		은행 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일	시	12.9	12.10, 12.18	12.14	12.18	
참 _	주재	사무처장	사무처장, 무처장 금감원 사무처장 부원장보(보험)		사무처장, 금감원 부원장보(비은행)	
	업계	국민, 제주 등 3인	삼성, 교보 등 5인	메리츠, 대우 등 7인	SBI 저축은행, 현대카드, 화서신협 등 9인	
	학계	외국어대, 금융연구원 등 2인	상명대, 보험연구원 등 2인	명지대, 자본연구원 등 2인	동국대, 금융연구원 등 2인	
	소관 부서	금융위 은행과, 산업금융과, 금감원 은행감독국 등	금융위 보험과, 전자금융과, 금감원 보험감독국 등	금융위 자본과, 자산과,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등	금융위 중소금융과,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등	

3. 결 과

- □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중 32개, 49%를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※ 주요 수용사례 별첨
 - 최종수용된 건중 다수는, 소관부서-업계간 긴밀한 토론 및 이해 중진을 통해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을 수용한 형태
 - 이외에 최초 불수용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, 외부 전문가의 정책변경 건의를 수용한 경우 등

< 재검토 회의 결과 (건) >
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합계
재검토 안건	8	23	18	16	65
수용* (수용률)	5 (63%)	1 4 (61%)	6 (33%)	7 (44%)	32 (4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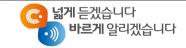
* 업계제시 대안에 대한 수용(일부수용 성격)도 포함

4. 향후 계획

- □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 예정
- o 현장점검반 활동은 **'금융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'**는 인식하에 기획된 만큼
- 현장 건의의견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 정책 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임
- ※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 (일부)수용으로 변경된 과제의 상세 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(http://better.fsc.go.kr)에 공개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sc.go.kr



별첨

주요 수용사례

- ▶ 청년층의 병원비·등록금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 소득확인 면제 (저축은행)
 - ☎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리지도팀 박성진 (3145-6781)
- ☐ (문제점) 저축은행 대출시 소득에 대한 서면증명^{*}을 받도록 하고 있음
 - * 소득 증명서, 통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근무지 대표자가 월급여 등을 기재하여 서명·날인
- 이에 따라 **무직이거나 소득증명이 어려운 대학생, 청년층이 제도권**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음
 - * 현재 대부업의 경우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확인의무 없음
- 아울러 소득확인서 취득과정에서 **사업주로부터 부당행위^{*}에 노출**되고 긴급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**적시 대출이 곤란**한 경우 발생
 - * 부당한 해고통보 및 소득확인서 날인 거부 등
- ☐ (개선내용) 대학생·청년층이 병원비·등록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* 에는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소득 서면증빙 면제하는 방안 추진**
 - * 관련계좌에 직접 대출자금을 송금하는 방식 등 편법적 대출금 활용 방지대책 병행
 - ** 추후 업계의견 수렴, 대출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시행예정
- ⇒ 생계곤란에 처한 청년층이 **제도권에서 긴급자금을 융통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미래 건전한 경제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**

- ▶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'의무보험'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확대
 - ☞ 금융위 보험과 신상록 사무관 (2156-9831)
- □ (문제점) 현재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제하
 - * 이외에 청약철회 제한 대상 보험으로는 1년 미만의 단기보험, 타인을 위한 보증 보험, 有진단보험 등이 있음
- 그러나 여타 의무가입 보험^{*}의 경우 청약철회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 인가^{**} 후 바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등 편법적 행태가 발생 가능
 - *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, 가스배상책임보험 등
 - ** 사업신고시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토록 의무화된 경우가 다수
 -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 취지상, **청약철회 이후 무보험**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
- □ (개선내용) 청약철회권 남용사례^{*}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의무보험 중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의 확대를 검토
 - *(예) 다른 임의 또는 의무보험보다 청약철회권 행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
- ⇒ 청약철회 제도를 편법적 활용하여 **재해위험을 일반국민에 전가시키는** 행위 예방
- ⇒ 불특정 다수인 의무보험 피보험목적물(예: 수련시설)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

- ▶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 완화
 - ☞ 금융위 자산운용과 송병관 사무관 (2156-9891)
- □ (문제점) 펀드 투자전략 노출 및 도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정보는 최소 2개월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
 - * 포트폴리오 정보가 타사로 이전될 경우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고유재산 운용 등에 활용할 가능성
- 그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**최근의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정상적 투자권유등 마켓팅에 활용할 수 없고, 투자자도 투자판단에 제약을** 받는 측면
- □ (개선내용)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 1개월 이전 것으로 변경
- o 다만,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협의하여 펀드별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정보의 제공 제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
 - 판매사가 포트폴리오의 정보를 투자권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**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 마련**
- ⇒ 투자전략 도용행위는 방지하면서도, **판매사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정보이용의 적시성 제고에 도움**

- ▶ 대고객 RP 대상으로 전자단기사채 편입을 허용
 - ☞ 금융위 자본시장과 김태훈 사무관 (2156-9816)
- ☐ (문제점) 전자단기사채는 CP를 대체할 투명한 단기상품으로서 2013년 도입되었으나, 대고객 RP 편입은 제한되어 있어 투자수요 충족 곤란

※ 전자단기사채

■ 발 행 방 식 : 사모·공모(사모위주), 전자적 방식으로만 발행가능

만 기: 1년미만 (통상 1개월 미만)
신용평가: 증권사가 인수·주선시 의무화
증권신고서: 만기 3개월 이내일 경우 면제

- o 제한이유는 일반투자자 투자제한(최소단위금액 1억원), 증권신고서 면제 (만기 3개월 이내)로 인한 **투자정보 불충분 등 상품특성을 감안**
- □ (개선내용) 공모방식 발행, 높은 신용등급 획득 등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
 - *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적 방식으로 예탁원에서 관리되어 CP에 비해 발행 투명성이 높은 장점 등도 감안
- ⇒ CP 대체수단으로서 전단채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
- ⇒ 전단채 매수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**중권회사 등 발행사의 안정적 단기자금조달에 기여** 가능
 - * 자산운용사(MMF) 등에 치중된 증권사 자금공급원 확대

- ▶ 꺾기규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펀드 등을 해약해야하는 애로사항 해소☎ 금융위 은행과 전희규 사무관 (2156-9816)
- □ (문제점) 현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보험, 편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주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
- o 이와관련, 수익 변동성이 심한 **펀드 등 금융투자상품**의 경우
 -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, 여신실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에 상품을 해지해야 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가능
- ☐ (개선내용) 꺾기방지 규제에 의해 '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 되는 경우'에는 규제적용을 배제^{*}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^{**}
 - * 예컨대 손실이 발생한 펀드상품의 경우 해지 불필요
 - ** `16.1월 시행되는 은행법 시행세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
- ⇒ 꺾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**오히려 차주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** 시키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